#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08

발의연월일: 2020. 12. 1.

발 의 자: 강기윤·김선교·김희국

이명수 • 윤영석 • 김예지

김태호 · 엄태영 · 김희곤

이종성 · 김도읍 · 최형두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되,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해당 민간 의료기관의 장이 지급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여비 등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지급하여야 함.

그런데 공중보건의사가 초과근무 등을 하는 경우에도 수당 지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보수 등에 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에게 보수 등이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 법률 제 호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지급하는 보수, 수당 및 직무 수행 에 필요한 여비 등(이하 "보수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정당한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 결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 이 보수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하 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보수 등) ①・② (생 략)	제11조(보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 </u>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단
	서 및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
	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
	설의 장이 지급하는 보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이하 "보수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u>있다.</u>
<u> &lt;신 설&gt;</u>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실시함에 있
	어서 필요한 자료를 공중보건
	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
	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
	는 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u>&lt;신 설&gt;</u>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 결과 공중보건
	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
	설의 장이 공중보건의사에게
	<u>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등을 지</u>

	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중보건
	의사의 배치를 취소하는 등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u>③</u> (생 략)	<u>⑥</u> (현행 제3항과 같음)